## 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

[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1. 25. 2015고합203]

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김정훈(기소, 공판), 이윤희, 김상현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진석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